

사망신고

○사망신고

사망했을때, 시정촌의 사무소에 내는 신고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외에 사망한 사람의 체류카드 등을 소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본국정부에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절차방법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1)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 화장하기 전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2) 신고하는 사람 : 친족, 동거자, 집주인, 토지주인, 건물관리인, 토지관리인, 후견인 등

(3) 신고하는 곳 : 사망한 장소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 시구정촌 사무소

니시노미야시에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35-3128

또는 각 지소(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센터(토·일·공휴일 제외),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

(4) 필요서류 :

① 사망신고서(병원 등에서 교부됩니다. 사망진단서와 동일양식)

② 사망진단서(사망했을 때, 의사의 증명을 받은 것)

③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혹은 임의 후견인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명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재판서 등본

※주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